

학 칙



성운대학교
SUNG WOON UNIVERSITY

(최종개정 : 2026. 2. 28.)

성운대학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대학은 성운대학교(이하 “대학” 또는 “학교”라 한다)라 한다.(개정 2020.2.28.)

제3조(위치) 본 대학은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대학길 105(화남리 1135-5번지)에 둔다.

제4조(설치 학과 및 입학 정원) ① 본 대학의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1] 과 같다

② (세부전공) 각 학과별로 세부전공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① 본 대학은 학사학위 또는 동등 학력인정자의 계속 교육을 위하여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8.4.)

②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학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선발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등록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5.8.4.)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의 수업 연한은 2년 또는 3년으로 한다.

② AI말산업학부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단,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경우는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25.8.4.)

③전문기술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신설 2025.8.4.)

제6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3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7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한다.

1. 제 1 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로 한다.

2. 제 2 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으며, 졸업 학기에 현장실습 및 국내·외 인턴십을 실시하는 학과는 2학기를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습학기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습학기제 또는 계절수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의 학기구분에도 불구하고 3학기 이상의 다학기제 및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다른 유연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1.28.)

제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감염병 등에 따른 국가 「위기단계」 발생 시 수업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2.26.)

제10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공휴일

2. 일요일

3. 개교기념일

② 하계방학·동계방학 기간은 매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1.28.)

제11조(임시휴업) 총장은 비상재해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신입학

제12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교육부의 전문대학 입학전형기본계획에 의거한 시기까지로 한다. 다만, 편입 및 재입학,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은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 이내로 한다.(개정 2017.8.25.)

제13조(입학자격) ①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을 포함,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개정 2017.8.25.)

②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관련 분야 재직경력(학사학위를 받기 전의 경력이나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자로 한다.(신설 2025.8.4.)

제14조(입학지원절차) 입학 지원하는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5조(입학전형) ① 신입학 전형에 대한 전형방법과 그 세부사항은 매 학년도 관찰청이 정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7.8.25.)

②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입학전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술석사과정 시행계획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신설 2025.8.4.)

제15조의2(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계열·학부·학과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신설 2016.11.15.)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6.11.15.)

제16조(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입학허가 및 등록) 입학허가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납과 차등납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입학취소)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2.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3.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입학지원방법을 위반한 자
4. 기타 입학모집요강 등에서 총장이 정한 입학취소요건 해당자

제20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장 편입학 · 재입학 및 전과

제21조(편입학) ①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수료)한 자,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 취득자,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제2학년(3년제는 2학년 및 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다. 다만,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외국인 학생과 폐교된 대학의 학생에 대한 편입학은 1학년 2학기 초(3년제의 경우는 2학년 2학기 초)에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6.28.)

1. 1학년 2학기 편입은 16학점 이상 취득자(개정 2017.6.28.)
 2. 2학년 1학기 편입은 32학점 이상 취득자(1학년 수료 이상자)(신설 2017.1.12.)
 3. 2학년 2학기 편입은 56학점 이상 취득자(2학년 1학기 수료 이상자)(신설 2017.1.12.)
 4. 3학년 1학기 편입은 72학점 이상 취득자(2학년 수료 이상자)(신설 2017.1.12.)
- ② 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개정 2017.1.12.)
- ③ 삭 제
- ④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한 편입학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7.1.12.)
- ⑤ 기타 편입학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1.12.)

제22조(재입학) ① 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 제1항(처벌) 및 산업체위탁 교육생중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장의 추천과 교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재입학은 제적 전 학과로 재입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과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취득한 후 다른 학과로 재입학을 할 수 있다.
- ④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에 한한다.

제23조(전과) ① 본 대학 재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교내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산업체위탁교육생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등록생의 전과는 불허한다.

② 전과의 과별 입학정원은 전입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한다.

③ 전과의 과별 전출정원은 전출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한다.

④ 전과의 신청은 수업일수 1/2부터 종료일까지로 하고 신청 다음 학기부터 전과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⑤ 전과한 자는 전출 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생은 전과를 불허한다.(신설 2025.8.4.)

⑦ 전문기술석사과정생은 전과를 불허한다.(신설 2025.8.4.)

제 6 장 휴학, 퇴학 및 제적

제24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 창업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18.2.28.)

② 휴학은 1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 및 창업휴학의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2.28.)

③ 휴학은 군휴학, 일반휴학, 창업휴학으로 분류한다.(개정 2018.2.28.)

1. 군휴학 : 병역의무복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통지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일반휴학 : 질병,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은 병·의원 전문의(한 의사 포함)진단서, 연수허가서 등 관련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창업휴학 : 창업휴학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했거나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8.2.28.)

④ 병역의무복무로 인한 군휴학자가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개별적인 시험을 실시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⑤ 휴학생은 학기 시작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다.

⑥ 신입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전과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및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8.1.4.)

⑦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 휴학할 수 있다.(신설 2018.1.4.)

제25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개정 2018.1.4.)

② 복학은 학기개시 후 수업일수의 1/4선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일반휴학 중 군휴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 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처분을 취소한 후 군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자퇴) ①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 퇴학(이하 “자퇴”라 한다) 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27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4주(28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삭 제(2024.1.22.)
3. 타교에 입학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5. 삭 제(2024.1.22.)
6. 질병 또는 다른 사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및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제 규정 위반자(개정 2024.1.22.)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교과 및 수업

제28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 학점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5% ~ 25%, 전문교과 75% ~ 85%로 한다. 단, 외국인 유학생반,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산업체 위탁교육, 산업체 맞춤형 사업관련 개설반 등은 산업체의 요구와 개설학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26.)

② 각 과별 교육과정(현장실습 포함)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 학점단위로 이수결과를 조합하여 역량을 인정하는 나노디그리,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수한 학습자들에게 역량을 인정하는 자격증 또는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4.2.29.)

④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등 고등학교, 산업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의 수행 완성도가 높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역량기반(NCS)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으며, 역량기반(NCS)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12.15.)

⑥ 산학협동의 활성화 및 우수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내·외 현장연수(인턴십)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2.28.)

제29조(학점이수)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는 1학기 30시간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5시간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제1학기 및 2학기의 경우 10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0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4.2.29.)

③ 전문기술석사과정의 학점이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25.8.4.)

제30조(학점인정) ① 입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나 입영 또는 복무 중에 이수한 과정,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수행한 직무경험과 교육의 평가인정 결과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수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한 세칙 및 선행학습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편입생의 경우, 학습경험인정 학점과 편입학 인정받은 교과목에 대한 중복인정은 불가하

다.(개정 2024.1.22.)

② 삭 제(2019.2.28.)

③ 편입학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1학년 2학기 편입은 총 20학점 이내, 2학년 1학기 편입은 총 학점 40학점 이내, 2학년 2학기 편입은 총 60학점 이내, 3학년 1학기 편입은 총 학점 80학점 이내에서 소속된 모집단위의 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17.6.28.)

1.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신설 2017.1.12.)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신설 2017.1.12.)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신설 2017.1.12.)

④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 적용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경우, 학기당 3학점 이내 연간 6학점까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⑥ 본 대학교와 업무 협정을 맺은 특정 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제공하는 교육·실습 과정을 이수한 경우 최대 3학점 범위 내에서 본 대학교 취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7.8.25.)

⑦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진행을 위하여 교과과정에서 매 학기 한국어 과정을 12학점 이내에서 개설 할 수 있다.(신설 2017.8.25.)

⑧ 국내·외 현장연수(인턴십)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기당 20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단, 교직과목 학점은 예외로 한다.(신설 2019.2.28.)

⑨ 국내·외의 협약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11.28.)

⑩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K-MOOC플랫폼에서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학기당 6학점, 연간 12학점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졸업학점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19.11.28.)

⑪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 대학 비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으며, 졸업학점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2.28.)

⑫ 본 대학이 인정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을 취득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3.6.1.)

제31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주말수업, 전일제 수업, 학교 밖 수업, 원격수업, 온·오프 혼합수업(블렌디드, 플립러닝 등), 계절수업, 현장실습 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4.8.31.)

②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총장이 공고한다.

③ 수업시간표는 매 학기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다.

④ 매 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그 학기 수업개시 전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 06:00~23:50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9.11.28.)

⑤ 다만, 학사운영상 소속 학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 수업을 운영 할 수 있다.

⑥주간수업은 50분을 1시간 수업으로 인정한다.(신설 2018.6.15.)

⑦야간수업은 45분을 1시간 수업으로 인정한다.(신설 2018.6.15.)

제32조(집중수업) 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 등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의 1(융합매트릭스 운영) 재학생에게 다양한 전공체험 및 진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융합매트릭스를 운영하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11.28.)

제32조의 2(학교 밖 수업) 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구분한다.(신설 2024.08.31.)

② 이동수업은 대학소재지에 출석 수업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의 장소에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수업을 말하며, 이동수업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24.08.31.)

1.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던 학생 또는 장애가 있는 학생
2.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 직업 특성상 통학이 어려운 학생

③ 협동수업은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현장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목적으로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시설, 장비, 인력을 활용하여 학교 밖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협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학점인정의 범위는 졸업학점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신설 2024.08.31.)

④ 학교 밖 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4.08.31.)

제33조(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15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강사 등의 책임시간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6.2.28.)

제34조(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출석의무)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36조(출석인정) ① 학생의 질병검사, 예비군 교육, 상고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예비군법 제6조(훈련)에 따라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 또는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대상 학생은 예비군법 제10조의 2(학업보장)에 의거하여 그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신설 2024.01.22.)

제37조(원격강의) ① 본 대학은 인터넷을 통한 원격강의를 개설하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2.15.)

② 총장은 학생이 제1항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원격강의를 수강할 경우 정규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강의를 받은 것으로 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출석강의(Off-Line강의)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21.12.15.)

- ③ 원격강의 수강에 의한 학점인정은 본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 · 운영하는 사이버 강좌를 수강할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대학이나 국가 기관 등이 본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점교류협약 등을 맺을 경우 이에 따라 본 대학에서 부여하는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15.)
- ④ 사이버캠퍼스에서 운영하는 e-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둔다.(신설 2019.2.28.)

제 8 장 성적평가 및 졸업

- 제38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학기 중 중간시험을 행할 수 있다.
- ② 시험은 주 · 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③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 ④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 할 경우 중간 및 기말 평가를 대신한 직무수행능력평가 및 총괄평가 등에 의하여 평가 할 수 있다.
- 제39조(추가시험)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된 자에 대해서는 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을 부과 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 ② 제 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시험 성적은 A0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 제40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 학습 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배 점	평 점
A+	100~95	4.5
A0	94~90	4.0
B+	89~85	3.5
B0	84~80	3.0

C +	79~75	2.5
C0	74~70	2.0
D +	69~65	1.5
D0	64~60	1.0
F	59점 이하	미취득
P		불계

- ② 교과목 성적이 D0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③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의 실험, 현장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이때, 취득학점은 인정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 ④ 수강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 ⑤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아래 표와 같이 운영하며,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한다.
- ⑥ 성적의 평가는 시험결과, 출결상황, 과제평가, 학습태도 등을 근거로 하여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부여한다.
- ⑦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학업성적을 급제(P)/낙제(F)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급제(P)만 학점에 포함한다.
- ⑧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교과목, 즉 사회봉사에 있어서는 급제(P)/낙제(F)를 적용한다.

제41조(성적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매학기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3.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4.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

제42조(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졸업 및 수료)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졸업 요건을 갖춘 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별지1] 서식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2년제 과정 60학점, 3년제 과정 90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졸업학점 중 교양 및 전공 최소 이수학점 범위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다만, 편입학자와 재입학자, 전과자는 교양 및 전공 최소 이

수학점에 인정학점을 포함한다.(개정 2026.2.28.)

교과구분 \ 학제	2년제	3년제
교양	15	18
전공	39	59

③ 이수 교과목 중 사회봉사를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개정 2023.6.1.)

④ ② ~ ③항의 졸업조건을 충족한 신청자에 한해 신청 당시 전체 평점이 3.5이상인 자는 한 학기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신설 2023.6.1.)

⑤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졸업최소학점, 학위수여기준 등 졸업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5.8.4.)

제44조(졸업유예) ① 학칙 제43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이 원할 경우 학기단위로 2회까지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졸업유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1.3.1.)

제45조(후기졸업)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1. 졸업학점 미달자

2. 교양교과 학점 미달 및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자

② 후기졸업자는 2개 학기 내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5.)

제46조(학위수여) ① 본 대학에서 졸업이 인정된 자는 [별지1] 서식에 의하여 [별표 3]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국외 타 대학과의 복수학위 학술 교류협정에 따라 양 대학은 각각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8.1.4.)

③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1.4.)

④ 석사학위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자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별표 6]에 해당하는 석사학위를 수여하며, 학위증서에는 교육과정상의 전공을 표기할 수 있다.(신설 2025.8.4.)

제47조(학위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 고등교육법 제52조에 따라 본 대학 학위수여자 중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무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기수여한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11.15.)

- ① 본 대학의 입학 서류를 허위로 제시하여 부정하게 입학한 자
- ② 재학 중 부당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학위를 수여 받은 자

제48조(수료) 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자에게 [별지2] 서식으로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 1. 1학년 수료 : 30학점 이상
- 2. 2학년 수료 : 60학점 이상
- 3. 3학년 수료 : 90학점 이상

②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전문기술석사 이수자에게 [별지2-1] 서식으로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25.8.4.)

제 9 장 평생교육

제49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산업체등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계교육으로 이수한 과정을 필요한 절차를 거쳐 협약에 따른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4.01.22.)

제50조(공개강좌) ①본 대학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1조(비학위 전공심화과정) ①전문대학 졸업자의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8.6.15.)

② 입학자격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1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전공심화과정의 설치과정, 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① 고등교육법 제49조, 제5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에 의거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관련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전공심화과정은 우리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설치한다.

③ 전공심화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동법률시행령, 동법률시행규칙 등에 의거하여 인정될 수 있다.

④ 산업체 경력이 없어도 본 대학의 해당학과를 졸업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8.6.15.)

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6.15.)

⑥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24.2.29.)

제53조(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1년제 학과는 2학기 이상, 2년제 학과는 4학기 이상 재학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별지 1-1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11.28.)

①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1년제는 20학점, 2년제는 48학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5.2.25.)

제54조(시간제 등록제) ① 본 대학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간제를 등록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 모집인원은 정규학생과 통합하여 모집하는 시간제 등록인원은 입학정원의 10% 범위 이내로 하고,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인원은 입학정원의 30%범위 내에서 정한다.(개정 2024.8.31.)

③학기별 모집단위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8.31.)

모집단위	모집인원(명)
인문사회계열	통합반 : 입학정원 10%
	별도반 : 입학정원 30%

④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24학점으로 하고, 연간 42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개정 2024.8.31.)

⑤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납입금 등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범위 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학점은행제) ① 총장은 평생학습진흥을 위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학습과목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2.28.)

②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위수여 요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이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15학점 이상, 전공 45학점 이상, 총 8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3.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48학점(다만, 전문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나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36학점) 이상인 사람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한 학습과정 이수 및 동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이 총 18학점 이상인 사람.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학습과정 이수, 교육과정 이수 및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연간 42학점(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기타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5. 본 대학교 부설원격평생교육원 및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개정 2019.11.28.)
 6.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매학기 모집인원, 전형방법, 등록, 교육과정 및 등록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점은행제 학사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한다.
- ④ 제1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의 종별 및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학위종별 및 전공에 따른다.
- ⑤ 기타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2.28.)

제56조(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① 본 대학에는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10 장 학생활동

제57조(학생자치기구) ① 본 대학의 정통과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 성운대학교 총학생회(이하“총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0.2.28.)

② 본 대학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총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및 퇴학(자퇴 포함)과 동시에 총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단, 휴학 및 정학 처분 기간 중에는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③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8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가 없다.

②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치적 활동 및 집단적 행위, 시위, 성토, 농성, 수업거부, 불온 게시물의 무단부착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다.(개정 2016.11.15.)

제59조(학생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학생단체의조직)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규정에 의거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1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 학년 초 학생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지도를 분담시키고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지도를 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학생 개인별 상담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

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1조의2(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① 대학은 장애 학생이 장애로 인하여 입학과 수
학에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2.7.26.)

②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29조에 따라 본 대학에 장애학생특별지원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6.1.)

③ 제1항을 위한 세부 사항과 제2항에 의한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6.1.)

제61조의3(집단활동) ① 집단활동(동아리, 학생회, 학과 행사, 대학 전체행사 등)에
대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대표학생과 담당교수를 책임자로 둔다.(신설
2016.11.15.)

② 책임자는 집단활동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신설 2016.11.15.)

③ 집단활동중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집단활동에 대한 운영중지·폐쇄·재정
지원 중단 등을 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행위자 및 집단활동 책임자에 대하
여 징계를 할 수 있다.(신설 2016.11.15.)

제62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 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제63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
(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4조(처벌) ①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
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직접 징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1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포
함)는 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제 11 장 규율 및 상벌

제65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고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

제66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7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무계출 결석이 4주년을 초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 12 장 납 입 금

제68조(납입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 시기에 소정액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일시납, 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9.11.28.)

② 실습비, 학생회비 및 기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1.28.)

③ 납부한 납입금은 과오로 인한 것 이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④ 삭 제(2025.8.4.)

제69조(결석 또는 정학시의 납입금) 납입금은 결석·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70조(납입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1조(납입금의 반환) ① 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전항의 반환금은 학교수업료입학금에 관한규칙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제 13 장 학 금

제72조(장학금)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자퇴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4 장 교수회 및 제위원회

제73조(구성) ① 본 대학에는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서 구성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8.2.28.)

제74조(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회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 그 직무는 부회장이 대행한다.(개정 2018.2.28.)

②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2.28.)

1. 교수회 임원의 선출, 회칙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8.2.28.)
2. 교수회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8.2.28.)

3. 대학평의위원회의 교수평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개정 2018.2.28.)
4. 학과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5조(교무위원회) ①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본 대학의 기본적인 정책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5조의1(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22.7.26.)

② 위원회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하여 정한다.(신설 2022.7.26.)

1. 교직원 3명 : 학사지원처장, 행정지원처장, 학교법인 추천 재단 인사(신설 2022.7.26.)

2. 학생 3명 : 총학생회장, 총학생회 추천(신설 2022.7.26.)

3. 전문가 2명 : 총장이 위촉(신설 2022.7.26.)

③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신설 2022.7.26.)

④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22.7.26.)

제76조(제위원회) ① 본 대학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8.30.)

② 학생지도위원회, 장학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11.15.)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에 따라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3.6.1.)

④ 삭 제.(2022.7.26.)

⑤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 2에 의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1.8.30.)

⑥ 학술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과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학술정보센터 운영위원회를 두며, 학술정보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11.15.)

⑦ 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6.11.15.)

제 15 장 학칙 제 · 개정절차

제77조(학칙 제·개정) 이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학칙개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부서장은 개정안을 학사지원처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5.)
- ② 학사지원처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교내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한다.(개정 2020.2.28.)
- ③ 각 부서장은 예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④ 총장은 학칙 개정안을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공포한다.(개정 2021.2.26.)

제 16 장 직 제

제78조(교직원) ① 본 대학에 두는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하며, 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1.22.)

② 본 대학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둔다.(개정 2016.11.15.)

③ 본 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특임교수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11.28.)

1. 겸임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초빙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3. 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자.
 4. 특임교수 : 특정 분야에 있어 경력과 식견이 탁월한 자.(신설 2016.11.15.)
- ④ 제1항 및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

중점교원 등을 둘 수 있다.(신설 2016.11.15.)

제79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교무를 통괄 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 할 수 있다.

③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80조(조직) ① 본 대학에는 기획처, 학사지원처, 학생지원처, 산학협력처, 입시지원처, 행정지원처, 대외협력처 및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개정 2023.6.1.)

② 기획처에는 처장을 보하여 처장은 총장을 보좌하여 교내 모든 부서를 통괄한다. 각 처에는 처장을 보하여 처장은 산하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9.11.28.)

③ 각 처의 사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7 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81조(부속기관) ① 본 대학에는 학술정보센터를 두며 그 외에 부속기관 설치는 직제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1.2.26.)

1. ~ 20. <삭 제>

②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③ 학술정보센터는 『대학도서관 진흥법』 제6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학술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 조직, 학술정보센터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학술정보센터 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신설 2016.11.15.)

2. 학술정보센터 발전계획의 수립(신설 2016.11.15.)

3. 사서 및 전문직원의 배치기준과 교육·훈련 시간(신설 2016.11.15.)

4. 시설 및 학술정보센터 자료(신설 2016.11.15.)

제82조(부설기관) ① 본 대학에는 평생교육원 및 원격평생교육원을 두며, 그 외에

부설기관의 설치는 본 대학의 직제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1.2.26.)

1. ~ 10. <삭 제>

②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83조(학교기업) ① 본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성운대학교 기업(이하“학교기업”이라 한다)을 두며, 학교기업별 명칭, 소재지, 사업종목, 관련학과 또는 교육과정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20.2.28.)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은 총 2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한 학기당 인정 학점은 10학점 이내로 한다. 이 외의 사항은 본교 학생 현장실습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 대해 성운대학교 장학금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보상금 지급기준은 학교 기업 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1.22.)

제 18 장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제84조(성희롱 금지) ① 교직원 및 학생은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예운학원 정관 및 인사 규정, 본 대학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24.1.22.)

③ 이 학칙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표현행위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 진 것을 말한다.

제85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총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6조(피해자 구제조치 등) ① 총장은 성희롱 피해가 접수된 경우에는 피해사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개인정보 누설방지 및 구제방안 마련
2.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제61조 제2항에 의한 징계는 적절한 조치 강구
- ② 총장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여도 아니 된다.

제 19 장 산학협력단

제87조(설립근거)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본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설립한다.

- ② 산학협력단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한다.

제88조(명칭) 본 대학 산학협력단의 명칭은 “성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한다)이라 한다.(개정 2020.2.28.)

제89조(위치)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본 대학 안에 둔다.

제90조(산학협력단의 목적 및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산학협력단의 정관을 통해 정한다.

제91조(산학협력이사)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둔다.

- ② 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제92조(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제93조(행정사무) ①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행정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부서에는 부단장,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인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6.11.15.)

제94조(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정한다.

제 20 장 정보화 책임관

제95조(근거) 행정기관의 정보화 책임관지정·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 본교에 정보화 책임관을 둔다.

제96조(인사) ① 정보화 책임관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정보화 책임관은 학사지원처장이 겸직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사지원처장의 임기와 동일하다.(개정 2016.11.15.)

제97조(정보화 책임관의 업무) ①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보화를 고등교육기관 전반의 혁신과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한다.

② 정보화 책임관은 교무위원회 소속으로 하여 교내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제98조(행정사무) ① 교내 정보화 업무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센터를 정보화 책임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행정업무 부서로 한다.(개정 2024.1.22.)

② 정보화와 관련하여 학사지원처, 행정지원처와 관련된 업무는 각 부서와 정보화담당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처리한다.(개정 2016.11.15.)

제 21 장 대학자체평가

제99조(자체평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대학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2 장 보 칙

제100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성덕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성덕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 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과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전 명칭이 변경된 학과 졸업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해당학과의 졸업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2) (과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정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 ② 이 학칙 시행 전 명칭이 변경된 학과 졸업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해당학과의 졸업생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학과의 개편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 가. 학과 개편과 관련하여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학과의 개편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 가. 학과 개편과 관련하여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2) (학과의 개편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 가. 학과 개편과 관련하여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의 개편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가. 학과 개편과 관련하여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의 개편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가. 학과 개편과 관련하여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의 개편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가. 학과 개편과 관련하여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0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나. 사회복지계열 노인요양전공 졸업생은 2010학년도부터 노인요양재활과 졸업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의 개편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가. 학과 개편과 관련하여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1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의 개편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가. 학과 개편과 관련하여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2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의 개편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가. 학과 개편과 관련하여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3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2월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2) (학과의 개편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학과 개편과 관련하여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8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 (3) (졸업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43조는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2017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기존의 졸업학점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2월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1월28일부터 시행한다.
- (2) (학과의 개편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학과 개편과 관련하여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9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2월28일부터 시행한다.
- (2)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가.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성덕대학교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성운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 나.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학위증서 또는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는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2) (학과의 개편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학과 개편과 관련하여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1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 (3) (졸업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43조는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편입생은 신입생과 동일한 학번에 한함) 적용하되, 2020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기존의 졸업학점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2)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 학칙의 유아교육과에 입학하여 재적 중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종전 학칙에 따른 해당 학과 재적생으로 보며, 학적 변동으로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와 같은 학년에 복학하는 학생도 종전 학칙에 따른 유아교육과 재적생으로 본다.
- (3) (졸업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43조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편입생은 신입생과 동일한 학번에 한함) 적용하되, 2021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기존의 졸업학점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학과의 개편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학과 개편과 관련하여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3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 (3) (졸업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43조는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편입생은 신입생과 동일한 학번에 한함) 적용하되, 2022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기존의 졸업학점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2) (학과의 개편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학과 개편과 관련하여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3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2) (졸업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43조는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편입

생은 신입생과 동일한 학번에 한함) 적용하되, 2023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기존의 졸업학점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2) (학과의 개편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학과 개편과 관련하여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4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2) (졸업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43조는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편입생은 신입생과 동일한 학번에 한함) 적용하되, 2024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기존의 졸업학점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2) (학과의 개편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학과 개편과 관련하여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5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2) (졸업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43조는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편입생은 신입생과 동일한 학번에 한함) 적용하되, 2025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기존의 졸업학점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1]

성운대학교 2025·2026 학년도 입학정원

대계 열 분류	2025학년도 모집단위		수업 연한	입학 정원	2026학년도 모집단위		수업 연한	입학 정원	비고
자연 과학	안경광학과		3	25	안경광학과		2	25	수업 연한 변경
	AI말산업학부		3	21	AI말산업학부		3	21	
					웰라이프복지학부		2	54	증원 계열 이동
소계				46				100	
인문 사회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2	285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2	289	증원
	지역사회융합학부		2	85	지역사회융합학부		2	65	감원
	라 이 프 융 합 학 부	복지경영전공	2	27	라 이 프 융 합 학 부	복지경영전공	2	27	
		커뮤니티케어복지 전공		20		커뮤니티케어복지 전공		20	
		스마트융합복지 전공		23		스마트융합복지 전공		23	
		치유농업복지 전공		24					폐지
					자유전공학부		2	20	신설
	웰라이프복지학부		2	30					
소계				494				444	
합계				540				544	

2026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학 과	수업연한	입학정원
AI말산업학과	2	8

[별표2]학교기업의 명칭 등

<삭 제>(2021.12.15.)

[별표3] 성운대학교 전문학사 학위의 종별

학 위 의 종 별

일련 번호	종 별	해 당 학 과	비고
1	보 건 전문 학사	안경광학과	
2	사회복지 전문 학사	미래휴먼사회복지학부, 지역사회융합학부, 라이프 융합학부(커뮤니티케어복지전공, 스마트융합복지전 공, 치유농업복지전공)	
3	사회복지경영 전문 학사	라이프융합학부(복지경영전공)	
4	웰라이프복지 전문 학사	웰라이프복지학부	
5	말산업융합 전문 학사	AI말산업학부	

[별표4]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과 및 입학정원

2025학년도				
모집단위	입 학 정 원			비 고
	주간	야간	계	
상담심리학과 (산업체 경력없는)	-	20	20	2년 과정
노인재활복지학과 (산업체 경력없는)	20	-	20	2년 과정
아동보육복지학과 (산업체 경력없는)	20	-	20	2년 과정
지역사회융합학과 (산업체 경력없는)	20	-	20	2년 과정
스마트복지경영학과 (산업체 경력없는)	20	-	20	2년 과정
말산업학과 (산업체 경력없는)	8		8	1년 과정
합 계	88	20	108	

2026학년도				
모집단위	입 학 정 원			비 고
	주간	야간	계	
상담심리학과 (산업체 경력없는)	20	-	20	2년 과정
노인재활복지학과 (산업체 경력없는)	20	-	20	2년 과정
돌봄복지서비스학과 (산업체 경력없는)	20	-	20	2년 과정
지역사회융합학과 (산업체 경력없는)	20	-	20	2년 과정
복지경영학과 (산업체 경력없는)	20	-	20	2년 과정
AI말산업학과 (산업체 경력없는)	8		8	1년 과정
합 계	108	-	108	

[별표5] 성운대학교 학사 학위의 종별

학 위 의 종 별

일련 번호	학 과	학 위 명	전 공 명
1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사	상담심리학전공
2	노인재활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전공
3	돌봄복지서비스학과	사회복지학사	아동복지학전공
4	지역사회융합학과	사회복지학사	융합복지전공
5	복지경영학과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경영학전공
6	말산업학과	말산업융합학사	말산업학전공

[별표6] 성운대학교 전문기술석사 학위의 종별

일련 번호	학 과	학 위 명	전 공 명
1	AI말산업학과	전문기술석사	AI말산업

[별지1]성운대학교 학위증서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학 과 : _____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
하고 _____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1 년 월 일

성운대학교 총장 이학박사 윤지현

[별지1-1] 성운대학교 학위증서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학 과 : _____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
하고 _____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성운대학교 총장 이학박사 윤지현

[별지1-2] 성운대학교 학위증서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학 과 : _____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전문기술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_____석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성운대학교 총장 이학박사 윤지현

[별지2]성운대학교 수료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수료학과(계열) : _____

위 사람은 본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제__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함.

20 년 월 일

성운대학교 총장 이학박사 윤지현

[별지2-1]성운대학교 수료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수료학과(계열) : _____

위 사람은 본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_____ 학 과
전문기술석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함.

20 년 월 일

성 운 대 학 교 총 장 이 학 박사 윤 지 현